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3·15의거참여자명예회복
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진상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기회보장을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진상규명 신청 기간 연장(안 제3조)
 -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신청 기간 연장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2년 12월 9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진상규명 신청 기간) 제2조 제1항에 따른 3·15의거의 진상 규명 신청은 2022년 1월 21일부 터 <u>2022년 12월 9일까지</u> 해야 한다.	제3조(진상규명 신청 기간) ---- ----- ----- -- <u>2023년 12월 31일</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70